

kt 여비지침 개정안



[여비지침 개정안] -직급 폐지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비 고
제6조(수행 및 동행직원의 여비) ①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전무급 이상의 전문임원을 포함) 및 상임이사를 수행하는 직원 1인에 대하여는 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1.~3. (생략) 4. 일비는 해당직급의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여비의 경우 직급이 다른 2인 이상의 직원이 동일 목적(각종 단체행사 참석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여비 중 운임, 숙박료 및 식비에 대하여는 동행자 중 상위직급자의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행 및 동행직원의 여비) (생략) 1. ~ 2. (생략) 3. 식비와 일비는 해당 임원과 동액으로 지급한다. 4. (삭제) ② 국내여비의 경우 기준이 다른 2인 이상의 직원이 동일 목적(각종 단체행사 참석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여비 중 운임, 숙박료 및 식비에 대하여는 동행자 중 상위 기준의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기준 변경 직급폐지 반영
제7조(직원외 인사의 여비)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직원 외 인사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임·직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외 인사에 대한 직급 적용은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제7조(직원외 인사의 여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외 인사에 대한 여비는 회사의 여비 지급기준내에서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직급폐지 반영
제23조(국외여행 중 질병자의 귀국여비) (생략) 국내의 가족이 동반하여 귀국시켜야 할 때에는 가족중 1인에 대하여 2급직원 여비한도액 상당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국외여행 중 질병자의 귀국여비) (생략) 국내의 가족이 동반하여 귀국시켜야 할 때에는 가족중 1인에 대하여 직책자 여비한도액 상당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직급폐지 반영
제25조(국외사망자에 대한 여비) (생략) 사망자 유족중 1인에 대하여 7일의 범위내에서 2급 직원 상당의 국외여비 한도액과 사체운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국외사망자에 대한 여비) (생략) 사망자 유족중 1인에 대하여 7일의 범위내에서 직책자 상당의 국외여비 한도액과 사체운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직급폐지 반영

[별표]

현행								개정								비고	
[별표1] 국내여비 지급한도								[별표1] 국내여비 지급한도									
(단위:원)								(단위:원)									
구분 직급별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구분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철도	선박	항공	버스					철도	선박	항공	버스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고속철도 (특실) 또는 새마을호 (특실)	1등 정액	비즈니스	정액	12,000	82,000	27,000	임원	KTX 특실 또는 새마을호 특실	1등 정액	비즈니스	정액	12,000	90,000	27,000		
상무	“	2등 정액	“	“	12,000	60,000	27,000	상무보	“	“	일반	“	12,000	70,000	25,500		
상무보	고속철도 (일반) 또는 새마을호 (특실)	2등 정액	일반	“	12,000	60,000	25,500	직책자	KTX 일반 또는 새마을호 특실	2등 정액	“	“	12,000	50,000	24,000		
1급, 2급 수석급	“			“	12,000	50,000	24,000	비직책자	KTX 일반 또는 새마을호 일반	“	“	“	12,000	50,000	21,000		
3급 이하 책임급 이하	고속철도 (일반) 또는 새마을호 (일반)			“	12,000	50,000	21,000										
1. 운임은 인허요금으로 한다. 2. 선박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 1등정액 해당자는 특등, 2등정액 해당자는 1등을 적용한다. 3. 상임이사는 전무의 기준을 적용, 전문임원은 각 급 상당의 기준을 적용 4. 여행 순로에 해당등급 열차 미운행 구간은 하위등급 열차 적용 5. 버스(우등고속포함) 소요시간이 철도보다 빠를 경우 버스 적용 가능 6.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에서 근무하다 전환임용된 직원의 경우 합병 전 회사의 L급은 2급의 기준, P급 이하는 3급 이하의 기준을 적용								1. 운임은 인허요금으로 한다. 2. (삭제) 2. 상임이사는 전무의 기준을 적용, 전문임원은 각 급 상당의 기준을 적용 3. 여행 순로에 해당 등급 열차 미운행 구간은 하위등급 열차 적용 4. 버스(우등고속 포함) 소요시간이 철도보다 빠를 경우 버스 적용 가능 6. (삭제)									

현행							개정							비고	
[별표2] 국외여비 지급한도							[별표2] 국외여비 지급한도								
(단위:미불화)							(단위:미불화)								
구분 직급별	항공임	지역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	구분	항공임	지역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		
회장, 부회장	1등석 (First Class)	가지역 나지역	60 60	300 265	85 85	300	회장 , 부회장	1등석 (First Class)	가지역 나지역	60 60	300 265	85 85	300		
사장, 부사장, 전무	준1등석 (Business Class)	가지역 나지역	60 60	300 265	85 85	300	사장, 부사장 , 전무	준1등석 (Business Class)	가지역 나지역	60 60	300 265	85 85	300		
상무	“	가지역 나지역	50 50	180 150	80 80	280	상무	“	가지역 나지역	60 60	180 150	80 80	280		
상무보, 1급, 2급, 수석급	2등석 (Economy Class)	가지역 나지역	40 40	150 120	60 60	260	상무보	2등석 (Economy Class)	가지역 나지역	<u>50</u> <u>50</u>	<u>160</u> <u>130</u>	<u>70</u> <u>70</u>	<u>270</u>		
3급, 책임급 이하	“	가지역 나지역	35 35	120 95	50 50	240	직책자	“	<u>가지역</u> <u>나지역</u>	<u>40</u> <u>40</u>	<u>150</u> <u>120</u>	<u>60</u> <u>60</u>	<u>260</u>		
1. 상무보는 6시간 이상 탑승시(편도 직항노선 기준) 준1등석 적용 2. 상임이사는 전무의 기준을 적용, 전문임원은 각 급 상당의 기준을 적용 3.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에서 근무하다 전환임용된 직원의 경우 합병 전 회사의 L급은 2급의 기준, P급 이하는 3급 이하의 기준을 적용							비직책자	“	<u>가지역</u> <u>나지역</u>	<u>35</u> <u>35</u>	<u>120</u> <u>95</u>	<u>50</u> <u>50</u>	<u>240</u>		
							1. 상무보는 6시간 이상 탑승시(편도 직항노선 기준) 준1등석 적용 2. 상임이사는 전무의 기준을 적용, 전문임원은 각 급 상당의 기준을 적용 3. (삭제)								

현행						개정						비고
[별표3] 국외 이전비 지급한도						[별표3] 국외이전비 지급한도						
(단위:미불화)						(단위:미불화)						
구분	남미 아프리카주	유럽 북미	중동 대양주	아시아주	일본, 미 국	구분	남미 아프리카주	북미 유럽	중동 대양주	아시아	일본 미국	
임원	2,800	2,300	2,200	1,500	1,100	임원	2,800	2,300	2,200	1,500	1,100	
상무대우, 1급, 2급	2,600	2,100	2,000	1,400	1,000	상무보	<u>2,700</u>	<u>2,200</u>	<u>2,100</u>	<u>1,450</u>	<u>1,050</u>	
3급이하	2,300	1,900	1,800	1,200	900	직책자	<u>2,600</u>	<u>2,100</u>	<u>2,000</u>	<u>1,400</u>	<u>1,000</u>	
1.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에서 근무하다 전환임용된 직원의 경우 합병 전 회사의 L급은 2급의 기준, P급 이하는 3급 이하의 기준을 적용						비직책자	<u>2,300</u>	<u>1,900</u>	<u>1,800</u>	<u>1,200</u>	<u>900</u>	
						1. (삭제)						

현 행	개 정	비 고
	<u>부칙(2010.01.)</u>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현재 출장중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출장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